

7. 러시아(Russ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: 1922년
- 현행법: 1995년(장애); 1996년(강제연금보험); 1998년(비공식 연금기금); 2001년(공적연금); 2001년(노동연금); 2001년(강제연금보험); 2002년(조기노동연금); 2002년(보험기간); 2002년(투자); 2004년(세법), 2005년 시행; 2011년(연기금); 2013년(강제연금보험), 2014년 시행; 2013년(보험연금), 2015년 시행; 2013년(연기금), 2015년 시행; 2016년(세법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부조제도
 - 개인계좌제도는 1967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, 현재 개인계좌 보험료는 사회보험제도로 전환되었다.

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제도 : 근로자 및 자영자(독립 농업인 포함)
- 특별제도 : 공무원, 군인, 경찰, 우주비행사, 참전용사, 대규모 산업재해 희생자
- 사회부조제도 : 러시아 거주자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 : 없음
- 자영자
 - 일반적으로 연소득 300,000 rubles까지는 연간 보험료는 26,545 rubles +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1%
 - 특정 범주의 자영자는 다른 보험료율이 적용됨
- 사용자 : 전액 부담
 - 임금지급총액의 22%(특정 범주의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감액된 보험료율 적용)
 -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상한소득은 1,021,000 RUB(2018년)이며, 상한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% 보험료율 적용(일반적인 범주의 사용자에게 대해 적용)
- 정부 : 사회연금 자원 전액. 지방정부가 보충급여 재원을 지원할 수도 있음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- 가입기간이 9년 이상(15년이 될 때까지 매년 1년씩 증가, 2024년까지)으로 개인연금점수를 13.8점(2025년 30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.4점씩 증가) 이상을 취득한 60세(남자), 55세(여자) 도달자
- 연금점수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점수 및 보험기록 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됨
- 극북지역 및 특정 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롭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, 5명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 자녀가 있는 여성, 교사 등 일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수급요건이 완화됨.
- 실직자의 경우 고용청의 허가 시 2년 먼저 조기연금 신청 가능
- 연금은 연기 가능
- 퇴직 조건 없고, 근로하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조사 없음
- 연금은 국내법과 상호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이 가능함

• 사회노령연금(사회부조)

- 노령보험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(남자), 여자(60세) 도달자
- 외국국적 거주자는 15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
- 국가사회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- 퇴직 조건 없고, 근로하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조사 없음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3단계의 장애 정도 판정에 따라 연금이 산정됨

- 장애 1급 : 100%의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상시 간호 필요
- 장애 2급 : 100%의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상시 간호 불필요
- 장애 3급 : 50%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상시 간호 불필요
- 적어도 하루 이상의 근로기간은 있어야 함

• 사회장애연금(사회부조)

- 근로 이력이 없거나 18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1, 2, 3급 장애인에게 지급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사망자의 근속년수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지급됨
- 수급가능유족 : 14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로하지 않는 부양가족 또는 가족구성원; 18세 이하의 자녀, 형제 자매, 손자녀(학생은 23세, 18세 전부터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; 60세(남자), 55세(여자)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유족배우자, 부모 및 조부모

- 유족보험연금은 국내법과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이 가능함
- 사회유족연금(사회부조)
 - 한쪽 또는 양쪽 부모를 잃거나 부모를 모르는 17세(전업학생인 경우 23세) 이하 아동에게 지급
 - 사회유족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 : 기본고정급여와 소득비례급여로 구성
 - 기본고정급여
 -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80세까지 월 4,982.90 RUB; 피부양자 1명이면 6,643.87; 피부양자가 2명이면 8,304.84,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이면 9,965.81
 - 80세 이상인 경우, 피부양자가 없으며 9,965.80RUB; 피부양자 1명이면 11,626.77; 피부양자 2명이면 13,287.74; 피부양자 3명 이상이면 14,948.71
 - 소득비례급여
 - 가입자의 연금점수에 연금 청구 당해 연도 연금점수 가치를 곱하여 월 급여 산정
 - 연금점수 가치 : 81.49 RUB
 - 개인계좌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계좌금액이 사회보험 노령연금에 추가하여 지급됨
 - 연기연금 : 증액된 연금액이 지급됨
 - 급여조정 :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라 조정
- 사회노령연금(사회부조)
 - 5,180.248 RUB
 - 급여조정 : 물가상승률 변동에 따라 조정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기본고정급여와 소득비례급여로 구성
 - 기본고정급여
 - 장애 1급 :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9,665,8 RUB; 피부양자 1명이면 11,626.77, 피부양자 2명이면 13,287.74; 피부양자 3명 이상이면 14,948.71
 - 장애 2급 :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4,982.90 RUB; 피부양자 1명이면

6,643.87; 피부양자 2명이면 8,304.84; 피부양자 3명 이상이면 9,965.81

- 장애 3급 :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2,491.45 RUB; 피부양자 1명이면 4,152.42; 피부양자 2명이면 5,813.39; 피부양자 3명 이상이면 7,474.36

- 소득비례급여

- 가입자의 연금점수에 연금 청구 당해 연도 연금점수 가치를 곱하여 월 급여 산정
- 연금점수 가치 : 81.49 RUB

- 급여조정 : 물가상승률 및 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

• 사회장애연금(사회부조)

- 장애 1급 : 12,432.44 RUB(18세 이전 장애발생), 10,360.52 RUB(18세 이후 장애발생)
- 장애 2급 : 10,360.52 RUB(18세 이전 장애발생), 5,180.24 RUB(18세 이후 장애발생)
- 장애 3급 : 4,403.24 RUB(장애발생연령 무관)
- 급여조정 : 물가상승률과 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기본고정급여와 소득비례급여로 구성

- 기본고정급여 : 수급자격이 있는 각 유족에게 월 2,491.45 RUB 지급; 완전 고아의 경우 4,982.9 RUB

- 소득비례급여

- 가입자의 연금점수에 연금 청구 당해 연도 연금점수 가치를 곱하여 월 급여 산정
- 연금점수 가치 : 81.49 RUB
- 연금은 모든 수급권자에 균분 지급

• 사회유족연금(사회부조)

- 한쪽 또는 양쪽 부모를 잃거나 부모를 모르는 17세(전업학생인 경우 23세) 이하 아동에게 지급
- 사회유족연금은 해외 지급 불가
- 급여조정 : 물가상승률과 평균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

7.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관

- 노동사회보호부 (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)
 - www.rosmintrud.ru
 - 정책 개발 책임

- 러시아연방 연금기금 (Pension Fund of the Russian Federation)
 - www.pfrf.ru
 - 제도 운영

- 연방국세청 (Federal Tax Service, www.nalog.ru)
 -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